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605
----------	------

2021년 9월 8일
교육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년 8월 11일, 양민규 의원
2. 회부일자 : 2021년 8월 18일
3. 상정일자 :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
 - 제5차 교육위원회(2021. 9. 8.) 상정·원안가결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양민규 의원)

1. 제안이유

-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운동부의 경기력 향상을 통한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학교운동부 육성교의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 ~ 제2조).

- 나.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).
- 다.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관한 위원회 설치 사항을 정함(안 제7조).
- 라.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).

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그동안 학교운동부는 엘리트 체육인 양성을 위한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해오며 국내외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, 일부 학교운동부 운영에 있어서는 불법 모금 및 후원 등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습니다.
-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「학교체육진흥법」을 통해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반드시 편입시켜 운영하도록 하였고¹⁾,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각종 사업을 통해 학교운동부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.
- 따라서 동 조례안은 서울시내 학교운동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, 연수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교운동부를 체계적으로 육성·지원하기 위한 행·재정적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에 대한 안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학교운동부 내에 있는 불법모금·후원 등의 문제를 다소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1) 제11조(학교운동부 운영 등) ⑤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.

[표-1] 서울시내 체육특기학교 운영 현황

구분	학교수	팀수	인원(명)		
			남	여	합계
초	126	137	1382	472	1854
중	158	215	3387	455	3842
고	110	181	2845	561	3406
합계	394	533	7614	1488	9102

나. 주요 조문별 검토

1) 조례안의 구성

- 동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, 정의,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,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, 실태조사, 그리고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재정지원과 연수지원,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면에서 「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」²⁾와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을 준수하고 있어 조례 구성 측면에 있어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2) 재정지원에 대한 의견(안 제8조)

- 안 제8조는 교육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운동부 육성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훈련비 등 지원 유형을 각 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.

2) '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', 법제처, 2018.6.

- 현재 학교운동부의 운영 재원은 크게 ‘학교 예산 지원금’, ‘교육청 지원 목적사업비’, ‘학부모 후원금’, ‘외부 지원금’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, 이들 재원은 ‘학교회계’ 또는 ‘학교발전기금’³⁾으로 편성되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‘학교발전기금’의 경우 지도자 인건비, 출전비 등의 목적으로 조성·운영될 수 없는바⁴⁾, 야구와 같은 많은 코치를 필요로 하는 구기종목과 소수인원만으로 운영되는 비인기종목의 경우 전임코치를 제외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건비는 오롯이 학부모가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.
- 더욱이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훈련비, 용품구입비, 운동교구 설치비, 시설사용료 등은 학교운영비에서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, 일부 학교에서는 한정된 학교 예산의 한계로 인해 학부모들에게 이러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⁵⁾.

3)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 제64조(학교발전기금)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(이하 “발전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.

1.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
2.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·외의 조직·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

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.

1.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
2.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
3.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
4.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

③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·운용하여야 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,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.

⑧ 운영위원회는 학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.

1. 발전기금에 대한 결산
2. 제1호에 따른 결산 결과의 관할청 보고 및 학부모 통지

⑨ 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4) 서울시교육청, 「서울특별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회계관리요령」개정(안), 2021.2. 15쪽.

3. 발전기금의 사용

* 지도자(코치 포함) 인건비(수당 포함), 출전비 등 교직원 관련 비용은 조성·운영 불가

5) 연합뉴스, ‘선수 부족한 인천 일부 학교 운동부...학부모들 부담 가중’, 최은지 기자, 2021.6.16. 기사 참조; 연합뉴스, ‘경기교육청, 불법찬조금 공익신고하면 포상금’, 김도윤 기자, 2021.3.31. 기사 참조; 일요

[표-2] 서울시내 학교운동부(체육특기학교) 운영 지원 현황

(단위:천원)

순	지원 내용	지원액	비고
1	안전교구설비 보수·설치 지원	1,000,000	63교 지원
2	안전교구설비 보수·설치 지원(추경)	2,000,000	노후화·불안전·긴급보수가 필요한 교구 보유교 추가 지원 예정
3	전임코치 배정	13,974,850	293교(401명) 지원
4	전국소년체육대회 대회출전 및 훈련비 지원	917,051	1인당 25~30만원 지원 (본예산 549,400천원, 국고 367,651천원)
5	전국체육대회 대회출전 및 훈련비 지원	619,000	1인당 25~30만원 지원
6	전국동계체육대회 대회출전 및 훈련비 지원	36,900	1인당 15~20만원 지원
7	전국학생체육대회지원 대회출전 및 훈련비 지원	61,370	1교당 60~70만원 지원
8	동계강화 훈련비	500,000	1인당 10~15만원 지원
합계		19,109,171	

- 따라서 안 제8조는 학생선수 및 학생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체육시설 사용료, 용품구입비 등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, 학생선수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운동부를 육성·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2601, 2021.8.19.).

[표-3] 학교운동부 운영비 지원 방식

회계 학교운동부 운영비	학교회계				학교발전 기금회계
	수익자 부담금	학교 기본 운영비	교육청 지원 목적사업비	기타	학교발전기금
인건비	○	×	(공립)전임코치○ 일반코치×	×	×
대회출전비	○	○	○	○	○

신문, '뒤틀린 챙긴 의혹 전 코치, 관행이었다는 학교...고교 태권도부 '복마전'', 김상래 기자, 2019.11.23. 기사 참조

훈련비	○	○	○	○	○
용품구입비	○	○	○	○	○
기타 제 경비	○	○	○	○	○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V. 토론요지 : 없음

VI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

V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지원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학교운동부 육성교의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”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2. “학교운동부”란 「학교체육 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제3호에 따른 운동부를 말한다.
3. “학생선수”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.
4. “학교운동부지도자”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.

- ②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특성 및 훈련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육성·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

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2.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
3.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정책의 분석·평가에 관한 사항
4.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을 위한 법·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5.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, 학생선수,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제6조(실태조사 등)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운동부 운영경비, 훈련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·관리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의 설치)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 관련 정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한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.

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2.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
 3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하며,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재정지원)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학생선수 및 학생운동부지도자 지원
2. 학교 밖 체육시설 사용료 등 학교운동부 훈련비 지원
3. 학교운동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국·내외 체육 교류 지원
4. 학교운동부 후원 및 경기 관람 등을 위한 홍보 지원
5. 그 밖에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9조(연수 지원)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, 서울특별시, 타 지방자치단체,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